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등 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2026. 1.

한국도로공사 | 품질환경처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6부터 제67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참가자격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부서는 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참여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단, 도로분야 참여평가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4. 세부평가기준

1) 발주부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발주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세부평가기준 작성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발주부서는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1)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환경관리 주관부서에서 정한 기준을 산하기관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1)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서류 확인

1) 발주부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발주부서는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2)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평가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4) 발주부서는 3)에 따라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평가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5)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평가결과 공개

발주부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우리공사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2)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0.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되, 70점 미만 업체는 제외한다.

2) SOQ, TP 대상사업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입찰자에게 기술자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인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하고, 8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2개사를 선정하여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환경영향평가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Ⅱ. 세부평가방법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부서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재정상태 건실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재정상태 건실도 등 평가방법은 항목별 평가기준을 따른다.

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8.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정부 및 공공기관)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정부 및 공공기관)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구 분	해당평가	비 고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단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복잡사업과 단순사업을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 복잡사업으로 적용

11. 참여평가자 구성

1) 참여평가자별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전문분야
총괄(1인)	환경영향평가사
환경분야 책임평가자(3인) 환경분야 평가자(3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해양 중 택3
도로분야 책임평가자(1인) 도로분야 평가자(1인)	도로 및 공항

분야별 책임평가자 구성시 전문분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분야별 평가자 구성시에도 전문분야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단, 책임평가자와 평가자간의 전문분야는 중복이 가능하다.

※ 해양분야 평가자 참여는 공고문에 명시를 하는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2) 총괄은 대표사(출자지분이 높은 업체)에 소속되어야 한다.

3)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 참여평가자(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 구성비율은 각각 업체별 지분율에 따르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4) 참여평가자 구성 시 전문분야 중복참여, 지분율에 따른 인원 구성 미준수 등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평가에서 배제한다.

12. 참여평가자 경력산정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단, 도로분야 참여평가자는 타당성조사(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13.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참여평가자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도로분야 참여평가자는 타당성조사(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무에 종사한 경우 인정한다.

14.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5.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6. 기타 환경영향평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1)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 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Ⅲ. 항목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 가 기 준</th></tr>
<tr><td>공

통

사

항</td><td>
○ 용역의 종류
– 환경분야 : 환경영향평가등(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도로분야 : 실시설계등(타당성조사(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평 가 대 상</th></tr>
<tr><td>유형①</td><td>유사사업</td><td>-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고속국도
- 도로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국도 중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 도로법 제14조에 의한 특별시도, 광역시도, 동법 제15조의 지방도 중 왕복 4차로 이상으로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 또는 설계속도 80km/h 이상인 도로
※ 신설4km, 확장10km(2차로 이상) 이상인 사업에 한함(고속도로 제외)</td></tr>
<tr><td>유형②</td><td>유사사업이 아닌 도로사업</td><td>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중 유형①(유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td></tr>
<tr><td>유형③</td><td>기타사업</td><td>유형①(유사사업) 및 유형②(유사사업이 아닌 도로사업) 외 모든 사업</td></tr>
</table>
○ 용역 인정 기준
– 환경영향평가등 : 총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인정
– 실시설계등 : 총 과업기간이 150일 이상인 경우 인정
– 용역을 수차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된 경우 1건으로 인정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1건으로 인정

○ 발주청의 범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시에 한함)
– 유형①(유사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민자사업 시행자

○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된 것에 한해 평가함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기 준</th></tr>
<tr><td colspan="2">총계</td><td>[100]</td><td></td></tr>
<tr><td rowspan="15">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td><td>소계</td><td>[68]</td><td></td></tr>
<tr><td>(1) 자격·등급</td><td>[14]</td><td rowspan="14">【산출식 = 배점 × 자격비율】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기술사 인정범위
–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해양
– 도로분야 : 도로 및 공항
※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이 없을시 등급에 의한 평가 시행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세부평가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td></tr>
<tr><td>(가) 총괄</td><td>(3)</td></tr>
<tr><td>(나) 분야별 책임평가자</td><td>(6)</td></tr>
<tr><td>· 환경분야1</td><td>1.5</td></tr>
<tr><td>· 환경분야2</td><td>1.5</td></tr>
<tr><td>· 환경분야3</td><td>1.5</td></tr>
<tr><td>· 도로분야</td><td>1.5</td></tr>
<tr><td>(다) 분야별 평가자</td><td>(5)</td></tr>
<tr><td>· 환경분야1</td><td>1.25</td></tr>
<tr><td>· 환경분야2</td><td>1.25</td></tr>
<tr><td>· 환경분야3</td><td>1.25</td></tr>
<tr><td>· 도로분야</td><td>1.25</td></tr>
</table>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복잡	–	100%	100%	100%	90%	80%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기 준</th></tr>
<tr><td rowspan="11">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td><td>(2) 경력</td><td>[17]</td><td>【산출식 = 배점 × 경력비율】</td></tr>
<tr><td>(가) 총괄</td><td>(4)</td><td>○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td></tr>
<tr><td>(나) 분야별 책임평가자</td><td>(7)</td><td>※ 도로분야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도로 및 공항, 기타 토목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단, 실시설계등 용역만 경력으로 인정)
- 도로 및 공항 : 100%
- 기타 토목분야 : 60%</td></tr>
<tr><td>· 환경분야1</td><td>1.75</td><td rowspan="5">○ 경력년수 산출식
- 환경분야 = 환경영향평가등 × 1.0 + 기타 환경분야 × 0.6
- 도로분야 = 도로 및 공항 × 1.0 + 기타 토목분야 × 0.6</td></tr>
<tr><td>· 환경분야2</td><td>1.75</td></tr>
<tr><td>· 환경분야3</td><td>1.75</td></tr>
<tr><td>· 도로분야</td><td>1.75</td></tr>
<tr><td>(다) 분야별 평가자</td><td>(6)</td></tr>
<tr><td>· 환경분야1</td><td>1.5</td><td rowspan="4"></td></tr>
<tr><td>· 환경분야2</td><td>1.5</td></tr>
<tr><td>· 환경분야3</td><td>1.5</td></tr>
<tr><td>· 도로분야</td><td>1.5</td></tr>
</table>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기 준</th></tr>
<tr><td rowspan="11">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td><td>(3) 실적</td><td>[17]</td><td>【산출식 = 배점 × 실적비율】</td></tr>
<tr><td>(가) 총괄</td><td>(4)</td><td>○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td></tr>
<tr><td>(나) 분야별 책임평가자</td><td>(7)</td><td>단, 도로분야는 실시설계등 실적을 평가한다.</td></tr>
<tr><td>· 환경분야1</td><td>1.75</td><td rowspan="4">○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A)
– 사업발주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도로분야 평가시 실시설계등 용역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A) 없음</td></tr>
<tr><td>· 환경분야2</td><td>1.75</td></tr>
<tr><td>· 환경분야3</td><td>1.75</td></tr>
<tr><td>· 도로분야</td><td>1.75</td></tr>
<tr><td rowspan="5">(다) 분야별 평가자</td><td rowspan="5">(6)</td><td rowspan="5">○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B)
– 유형①(유사사업) : 1.0
– 유형②(유사사업이 아닌 도로사업) : 0.6

○ 실적건수 = ∑[(참여일수 / 총계약일수) × A × B]</td></tr>
<tr><td>· 환경분야1</td><td>1.5</td></tr>
<tr><td>· 환경분야2</td><td>1.5</td></tr>
<tr><td>· 환경분야3</td><td>1.5</td></tr>
<tr><td>· 도로분야</td><td>1.5</td></tr>
</table>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8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등 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단, 도로분야는 실시설계등 업무에 종사한 경우 연간 3건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4) 업무여유도	[17]	【산출식 = 배점 – [배점 × (1인당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가) 총괄	(4)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유형①(유사사업) 및 유형②(유사사업이 아닌 도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단, 도로분야 평가자는 실시설계등 용역으로 평가한다.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 환경분야1	1.75	
	· 환경분야2	1.75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Σ[계약금액 × (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 / 총계약기간 / 10인)] ※ 잔여개월수 산정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산정 ※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과업중지 및 협의완료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환경분야3	1.75	
	· 도로분야	1.75	
	(다) 분야별 평가자	(6)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환경분야1	1.5	
	· 환경분야2	1.5	
	· 환경분야3	1.5	
	· 도로분야	1.5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5) 교육훈련	[2]	**【산출식 = A + B】**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A)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B)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단, 도로분야 책임평가자 1인과 도로분야 평가자 1인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6) 과업의 이해도	[1]	**【산출식 = 배점 × Σ(전차용역 연장비율 × 전차에 참여한 인원 × A) / 평가대상인원】**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용역 연장비율 = 해당전차용역연장 / 당해용역연장 × 100 ※ 전차에 참여한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전차용역 참여평가자 소속 변동에 따른 계수 적용(A) - 현 소속과 전차용역 소속이 동일한 경우 : 1.0 - 현 소속과 전차용역 소속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0.5 ○ 전(前)단계 용역이 없는 경우 만점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7) 이적계수		**【산출식 = 평가자별 점수 × 이적계수】** ○ 이적 3개월 미만 : 0.8 ○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기 준</th></tr>
<tr><td rowspan="8">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td><td>소계</td><td>[32]</td><td></td></tr>
<tr><td>(1) 실적</td><td>[14]</td><td>【산출식 = 배점 × 실적비율】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A)
- 사업발주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B)
- 유형①(유사사업) : 1.0
- 유형②(유사사업이 아닌 도로사업), 유형③(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
※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 준공실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적용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발주하는 경우 수행금액 기준비율의 1/2 적용</td></tr>
<tr><td>(가) 수행건수</td><td>(7)</td><td>○ 건수 = Σ[(준공실적 × 공동도급비율) × A × B]
<table><tr><td>구 분</td><td colspan="5">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건수)</td></tr><tr><td>단순</td><td>10건이상</td><td>8건이상</td><td>6건이상</td><td>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복잡</td><td>15건이상</td><td>12건이상</td><td>9건이상</td><td>6건이상</td><td>6건미만</td></tr><tr><td>비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td></tr>
<tr><td>(나) 수행금액</td><td>(7)</td><td>○ 금액 = Σ[(준공금액 × 공동도급비율) × A × B]
<table><tr><td>구 분</td><td colspan="5">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금액)</td></tr><tr><td>단순</td><td>250%이상</td><td>200%이상</td><td>100%이상</td><td>50%이상</td><td>50%미만</td></tr><tr><td>복잡</td><td>500%이상</td><td>400%이상</td><td>350%이상</td><td>300%이상</td><td>300%미만</td></tr><tr><td>비율</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기 준</th></tr>
<tr><td rowspan="2">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td><td>(2) 신용도</td><td>[8.8]</td><td></td></tr>
<tr><td>(가) 부실평가 및 부실업체 등</td><td>(5.8)</td><td>【산출식 = 배점 − 행정처분 − 벌점 감점】

○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 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 부실작성 : 2점/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2년내 부실조사 등으로 인하여 우리공사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서면경고 : 1점/건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과 당시 공동도급 비율 적용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행정처분 = ∑(참여업자 행정처분 × 공동도급비율)
+ ∑(책임평가자 행정처분 / 5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 합산벌점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를 감점처리 한다.
− 합산벌점 감점
<table><tr><td>합산
벌점</td><td>0.5점
미만</td><td>0.5점이상
1.5점미만</td><td>1.5점이상
2.5점미만</td><td>2.5점이상
3.5점미만</td><td>3.5점
이상</td></tr><tr><td>감점</td><td>0</td><td>0.2</td><td>0.4</td><td>0.6</td><td>0.8</td></tr></table>
○ 합산벌점 = ∑(참여업자 합산벌점 × 공동도급비율)
+ ∑(책임평가자 합산벌점 / 5인)</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기 준</th></tr>
<tr><td>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td><td>(나) 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산출식 = 배점 × Σ(신용등급비율 × 공동도급비율)】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r><tr><td>대기업/중기업</td><td>100%</td><td>80%</td><td>70%</td></tr><tr><td>소기업</td><td>100%</td><td>90%</td><td>80%</td></tr></table>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기 준</th></tr>
<tr><td rowspan="2">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td><td>(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td><td>[6]</td><td></td></tr>
<tr><td>(가) 개발실적</td><td>(2)</td><td>【산출식 = Σ(환경분야 건당 1.0×공동도급비율×A×B)

○ 등급별 가중치(A)
<table><tr><td>구 분</td><td>신기술</td><td>특 허</td><td>실용신안</td><td>연구보고서*</td></tr><tr><td>계 수</td><td>1.0</td><td>0.6</td><td>0.3</td><td>0.1</td></tr></table>※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table><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tr><td>특 허</td><td>1.0</td><td>0.8</td><td>0.6</td></tr><tr><td>실용신안
연구보고서</td><td>1.0</td><td>0.8</td><td>-</td></tr></table>※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td></tr>
<tr><td>(나) 투자실적</td><td>(2)</td><td>【산출식 = 배점 × 기술개발 투자실적 점수】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기술개발 투자실적 비율
= Σ(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공동도급비율)
<table><tr><td>구분</td><td>1.5%이상</td><td>1.5% 미만
1.2% 이상</td><td>1.2% 미만
1.0% 이상</td><td>1.0% 미만
0.75% 이상</td><td>0.75% 미만
0.5% 이상</td></tr><tr><td>점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기 준</th></tr>
<tr><td>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td><td>(다) 활용실적</td><td>(2)</td><td>【산출식 = Σ(환경분야 건당 1.0×공동도급비율×A×B×C)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활용건수 및 금액(A)

<table>
<tr><td>활용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
<tr><td>활용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
<tr><td>가중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등급별 계수(B)

<table>
<tr><td>구 분</td><td>신기술</td><td>특 허</td><td>실용신안</td></tr>
<tr><td>계 수</td><td>1.0</td><td>0.6</td><td>0.3</td></tr>
</table>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table>
<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
<tr><td>특 허
실용신안</td><td>1.0</td><td>0.8</td><td>0.6</td></tr>
</table>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td></tr>
</table>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4) 공동도급	[0.8]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4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4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 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기 준</th></tr>
<tr><td rowspan="3">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td><td>(5) 업체능력 평가</td><td>[2.4]</td><td>○ 총괄 능력평가
– 총괄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평가는 2.4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서 미 제출시 평가점수를 각 0점으로 처리
○ SOQ, TP 평가시에는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배점(2.4)점은 총괄 실적으로 대신함
○ 환경영향평가 발주시 : 붙임 #1
○ 사후환경영향조사 발주시 : 붙임 #2</td></tr>
<tr><td>(가) 기술능력</td><td>(1.2)</td><td>【산출식 = 배점 × 기술능력비율】

○ 총괄 기술능력 평가 적용 비율
<table><tr><td>기술능력</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r><tr><td>비율</td><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tr></table>○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등급배분(붙임#3)</td></tr>
<tr><td>(나) 업무능력</td><td>(1.2)</td><td>【산출식 = 배점 × 업무능력비율】

○ 총괄 업무능력 평가 적용 비율
<table><tr><td>업무능력</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r><tr><td>비율</td><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tr></table>○ 업무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등급배분(붙임#3)

※ 붙임 #1 : 총괄 기술 및 업무능력 평가기준(환경영향평가)
※ 붙임 #2 : 총괄 기술 및 업무능력 평가기준(사후환경영향조사)
※ 붙임 #3 : 업체수별 ‘평가결과’ 등급 배분표</td></tr>
</table>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6) 하도급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7) 청년고용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3년내 퇴사한 경우 제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붙임 1 **총괄 평가기준(환경영향평가)**

□ 총괄 기술능력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급	점수	세부 평가 내용
당해용역의 이해도	최우수	40	o 당해 용역에 대한 특성,내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탁월. o 당해 용역의 주안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
	우수	30	o 당해 용역에 대한 특성,내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 o 당해 용역 수행의 주안점을 일반적 범주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
	보통	20	o 당해 용역에 대한 특성,내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보통 o 당해 용역 수행시 주안점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제시
	미흡	15	o 당해 용역에 대한 내용 및 이해도가 부족 o 당해 용역 수행시 주안점을 일반적인 수준에 못미치게 제시
	불량	10	o 당해 용역에 대한 내용 및 이해도가 매우 부족 o 당해 용역 수행시 주안점을 매우 부실하게 제시
유사용역 수행 경험도	최우수	30	o 독창성을 발휘한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매우 탁월 o 당해 용역 특성과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매우 많음 o 용역 수행시 민원등 난제 대처 능력 및 실적이 매우 뛰어남.
	우수	25	o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우수 o 당해 용역 특성과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많음 o 용역 수행시 민원등 난제 대처 능력 및 실적이 우수함.
	보통	20	o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보통 o 당해 용역 특성과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보통. o 용역 수행시 민원등 난제 대처 능력 및 실적이 보통.
	미흡	15	o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미흡 o 당해 용역 특성과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적음. o 용역 수행시 민원등 난제 대처 능력 및 실적이 미흡.
	불량	10	o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매우 미흡 o 당해 용역 특성과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거의 없음. o 용역 수행시 민원등 난제 대처 능력 및 실적이 매우 부진.
당해용역 관련 제안의 적정성	최우수	30	o 당해 용역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매우 독창적인 접근방안을 제시 o 환경영향저감 측면의 증진을 기할수 있는 획기적 아이디어 제시
	우수	25	o 당해 용역 검토항목 접근방안을 일반적 범주 상회의 수준으로 제시 o 환경영향저감 측면의 증진을 기할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 제시
	보통	20	o 당해 용역 검토항목 접근방안을 일반적 보편적 수준으로 제시 o 환경영향저감 측면의 증진과 관련된 보통 수준의 아이디어 제시
	미흡	15	o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의 접근방안이 일반적 수준에 미달 o 환경영향저감 측면의 증진과 관련된 보통 이하 수준의 아이디어 제시
	불량	10	o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 항목의 접근 방안이 부실 o 환경영향저감 측면의 증진과 관련된 아이디어 미 제시

□ 총괄 업무능력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급	점수	세부 평가 내용
업무수행내용의 적정성	최우수	20	o 당해 용역 관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이 매우 탁월 o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우수	16	o 당해 용역 관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이 우수 o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일반적 수준 이상
	보통	12	o 당해 용역 관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이 보통 o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일반적 수준
	미흡	8	o 당해 용역 관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이 미흡 o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일반적 수준 이하
	불량	4	o 당해 용역 관련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이 불량 o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매우 부실
작업계획의 적정성	최우수	20	o 용역 수행시 업무 선후관계 및 일정계획 수립이 매우 우수
	우수	16	o 용역 수행시 업무 선후관계 및 일정계획 수립이 보통수준 이상
	보통	12	o 용역 수행시 업무 선후관계 및 일정계획 수립이 일반적 수준
	미흡	8	o 용역 수행시 업무 선후 관계 및 일정계획 수립이 보통 수준 이하
	불량	4	o 용역 수행시 업무 선후 관계 및 일정계획 수립이 매우 부실
친환경고속도로 조성 등 적정성	최우수	30	o 당해 용역 관련 친환경고속도로 조성 계획이 매우 우수. o 용역 수행시 예상문제점 해소 계획이 매우 적정하고 합리적
	우수	25	o 당해 용역 관련 친환경고속도로 조성 계획이 보통 이상 o 용역 수행시 예상문제점 해소 계획이 일반적 수준 이상
	보통	20	o 당해 용역 관련 친환경고속도로 조성 계획이 보통 o 용역 수행시 예상문제점 해소 계획이 보편적이고 일반적
	미흡	15	o 당해 용역 관련 친환경고속도로 조성 계획이 보통 이하 o 용역 수행시 예상문제점 해소 계획이 보통 이하의 수준
	불량	10	o 당해 용역 관련 친환경고속도로 조성 계획이 매우 부실 o 용역 수행시 예상문제점 해소 계획이 매우 부적절
전문가 활용계획등	최우수	10	o 당해 용역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탁월 o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 방향이 매우 구체적
	우수	8	o 당해 용역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우수 o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이 보통수준 이상
	보통	6	o 당해 용역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일반적 수준 o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이 보통수준
	미흡	4	o 당해 용역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보통 이하의 수준 o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이 추상적
	불량	2	o 당해 용역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매우 부적절 o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을 미제시
산재예방조치의 적정성	최우수	20	o 당해용역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이 매우 우수
	우수	16	o 당해용역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이 우수
	보통	12	o 당해용역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이 보통
	미흡	8	o 당해용역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이 미흡
	불량	4	o 당해용역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이 매우 부실

붙임 2 **총괄 평가기준(사후환경영향조사)**

□ 총괄 기술능력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급	점수	세부 평가 내용
당해용역의 이해도	최우수	40	o 당해 용역에 대한 특성,내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탁월. o 당해 용역의 주안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
	우수	30	o 당해 용역에 대한 특성,내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 o 당해 용역 수행의 주안점을 일반적 범주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
	보통	20	o 당해 용역에 대한 특성,내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보통 o 당해 용역 수행시 주안점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제시
	미흡	15	o 당해 용역에 대한 내용 및 이해도가 부족 o 당해 용역 수행시 주안점을 일반적인 수준에 못미치게 제시
	불량	10	o 당해 용역에 대한 내용 및 이해도가 매우 부족 o 당해 용역 수행시 주안점을 매우 부실하게 제시
유사용역 수행 경험도	최우수	30	o 독창성을 발휘한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매우 탁월 o 당해 용역 특성과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매우 많음 o 용역 수행시 민원등 난제 대처 능력 및 실적이 매우 뛰어남.
	우수	25	o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우수 o 당해 용역 특성과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많음 o 용역 수행시 민원등 난제 대처 능력 및 실적이 우수함.
	보통	20	o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보통 o 당해 용역 특성과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보통. o 용역 수행시 민원등 난제 대처 능력 및 실적이 보통.
	미흡	15	o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미흡 o 당해 용역 특성과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적음. o 용역 수행시 민원등 난제 대처 능력 및 실적이 미흡.
	불량	10	o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성 발휘를 통한 성과 도출이 매우 미흡 o 당해 용역 특성과 유사한 용역 수행 경험이 거의 없음. o 용역 수행시 민원등 난제 대처 능력 및 실적이 매우 부진.
당해용역 관련 제안의 적정성	최우수	30	o 당해 용역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매우 독창적인 접근방안을 제시 o 환경영향저감 측면의 증진을 기할수 있는 획기적 아이디어 제시
	우수	25	o 당해 용역 검토항목 접근방안을 일반적 범주 상회의 수준으로 제시 o 환경영향저감 측면의 증진을 기할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 제시
	보통	20	o 당해 용역 검토항목 접근방안을 일반적 보편적 수준으로 제시 o 환경영향저감 측면의 증진과 관련된 보통 수준의 아이디어 제시
	미흡	15	o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의 접근방안이 일반적 수준에 미달 o 환경영향저감 측면의 증진과 관련된 보통 이하 수준의 아이디어 제시
	불량	10	o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 항목의 접근 방안이 부실 o 환경영향저감 측면의 증진과 관련된 아이디어 미 제시

□ 총괄 업무능력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급	점수	세부 평가 내용
업무수행내용의 적정성	최우수	20	o 당해 용역 관련 업무수행 범위 및 계획이 매우 탁월 o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우수	16	o 당해 용역 관련 업무수행 범위 및 계획이 우수 o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일반적 수준 이상
	보통	12	o 당해 용역 관련 업무수행 범위 및 계획이 보통 o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일반적 수준
	미흡	8	o 당해 용역 관련 업무수행 범위 및 계획이 미흡 o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일반적 수준 이하
	불량	4	o 당해 용역 관련 업무수행 범위 및 계획이 불량 o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수행 제시 내용이 매우 부실
협의내용 이행 관리 계획	최우수	30	o 당해 용역 관련 협의내용 이행 관리 계획 수립이 매우 우수
	우수	25	o 당해 용역 관련 협의내용 이행 관리 계획 수립이 보통수준 이상
	보통	20	o 당해 용역 관련 협의내용 이행 관리 계획 수립이 일반적 수준
	미흡	15	o 당해 용역 관련 협의내용 이행 관리 계획 수립이 보통 수준 이하
	불량	10	o 당해 용역 관련 협의내용 이행 관리 계획 수립이 매우 부실
설계도서 검토의 적정성	최우수	20	o 당해 용역 관련 설계도서 주요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이 매우 우수 o 분야별 현장 기술검토 계획 및 기술지원 방안이 매우 적정함
	우수	16	o 당해 용역 관련 설계도서 주요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이 보통 이상 o 분야별 현장 기술검토 계획 및 기술지원 방안이 일반적 수준 이상
	보통	12	o 당해 용역 관련 설계도서 주요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이 보통 o 분야별 현장 기술검토 계획 및 기술지원 방안이 보편적이고 일반적
	미흡	8	o 당해 용역 관련 설계도서 주요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이 미흡 o 분야별 현장 기술검토 계획 및 기술지원 방안이 보통 이하의 수준
	불량	4	o 당해 용역 관련 설계도서 주요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이 미구축 o 분야별 현장 기술검토 계획 및 기술지원 방안이 매우 부적절
전문가 활용계획등	최우수	10	o 당해 용역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탁월 o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 방향이 매우 구체적
	우수	8	o 당해 용역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우수 o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이 보통수준 이상
	보통	6	o 당해 용역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일반적 수준 o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이 보통수준
	미흡	4	o 당해 용역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보통 이하의 수준 o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이 추상적
	불량	2	o 당해 용역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이 매우 부적절 o 조직 및 업무관계를 고려한 중점 업무 관리방향을 미제시
산재예방조치의 적정성	최우수	20	o 당해용역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이 매우 우수
	우수	16	o 당해용역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이 우수
	보통	12	o 당해용역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이 보통
	미흡	8	o 당해용역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이 미흡
	불량	4	o 당해용역 관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이 매우 부실

붙임 3 업체수별 "평가결과"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2(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1	3	2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2	5	3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1	3	6	3	2
16	2	3	6	3	2

업체수	등 급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17	2	3	7	3	2
18	2	3	7	4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1	2	4	9	4	2
22	2	4	9	5	2
23	2	5	9	5	2
24	2	5	10	5	2
25	2	5	10	5	3
26	3	5	10	5	3
27	3	5	11	5	3
28	3	5	11	6	3
29	3	6	11	6	3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업체수에 대해서는 등급별 동등한 비율로 배분